2023년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2023. 04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여성벤처협회 Korea Venture Business Women's Association | HYU Holdings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첨부1 **모집 공고문 양식**

2023년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여성 특화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미만)을 육성하는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특화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체계적 육성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 **운영기관** :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 **지원대상**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여성 창업기업

□ **지원내용** : 1:1 수요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우수기업 대상 직접투자 최대 1억원, 참여기업별 사업화 자금 최소 1,000만원 지원(최대 1,400만원)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 11.30(목)

□ **선정규모** : 5개사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여성으로 사업공고일 현재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 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② 공고일('23.04.17)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①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신청자 명의로 국내 창업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본 프로그램에 선정될 경우 신청한 대표자가 협약 책임자가 되며, 협약기간 중 대표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② 공고일(23.04.17)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2016년 04월 17일 ~ 2023년 04월 17일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이어야 함

☞ 해외법인일 경우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나, 사업기간 내 국내법인 설립 필수

* 해외법인은 예비창업자로 간주

* 신청자격,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③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부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④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료 통보받은 자(기업)

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⑥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부처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참여 이력이 있거나 수행 중인 자(기업)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 : **중기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 **과기부**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농식품부** '농식품 전문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문체부** '관광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콘텐츠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수부**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⑦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2023년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동시수행 불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중 창업사업화),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k-스타트업센터, 해외실증지원, 한-러 혁신플랫폼

** 단, 공고일('23.00.00) 이전 창업지원사업을 기 수행(완료)한 자 및 접수마감일('23.00.00) 이내 협약이 종료(예정)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신청(지원)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⑧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⑨ 동 사업 운영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⑩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운영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1]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시 유의사항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한국여성벤처협회), 운영기관(액셀러레이터)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평가대상에서 탈락 처리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발각 시에는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음

○ 지원받은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 사용 시,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 도용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등에 따라 제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현금)을 창업기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기(직접)투자, 사업화자금(1천만원) 및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 운영기관(액셀러레이터)당 3개사 내외 직접투자

<table>
<tr><th>주요 지원내용</th><th>지원 규모</th></tr>
<tr><td>
○ 직접(초기)투자
* 우수 창업기업 3개사 내외(투자액은 별도심의 후 결정)
○ 기업별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 IR 컨설팅 및 데모데이 지원
○ 네트워킹 및 외부자원 연계
○ 사업화자금 지원(기업당 최소 1천만원 지급 지원)
* 시제품제작(보완)을 위한 외주용역비 및 재료비, 마케팅비, 지재권 취득비 등)
** 인건비, 기계장치비, 국내외 여비 등 집행 불가
*** 선정기업은 사업화자금의 30%(현금10%이상, 현물20%이하)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총사업비 구성 (예시)>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정부지원금</th><th colspan="2">창업기업 대응자금</th><th rowspan="2">총사업비</th></tr>
<tr><th>현금</th><th>현물</th></tr>
<tr><td>기준</td><td>총 사업비의
70% 이하</td><td>정부지원금의
10% 이상</td><td>정부지원금의
20% 이하</td><td>-</td></tr>
<tr><td>(예시)</td><td>10,000,000</td><td>1,440,000</td><td>2,850,000</td><td>14,290,000</td></tr>
</table>
* 현물의 경우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가능
○ 타 투자사의 후속투자 유치 지원
</td><td>5개사</td></tr>
</table>

4 선정절차 및 일정 및 선정자 의무사항

□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일정	세부내용
신청서 접수	4.16(월)~5.1(월)	- 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자격요건검토	5.2(화)	- 신청자격, 제외 대상, 제출서류 등 검토
▼		
서류평가	5.2(화)~5.4(목)	-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합격자 개별 통보)
▼		
발표평가	5.16(화)	- 대표자(사업 신청자) 발표평가(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선정	5.19(금)	-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세부추진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사항

○ 지원받는 사업화자금의 30%(현금10%이상, 현물20%이하)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주관기관(한국여성벤처협회) 및 운영기관(액셀러레이터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창업상담, 교육, IR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종료년도 다음해부터 4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 유지 및 4년간 성과관리 등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신청 · 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3년 04월 17일 ~ 05월 01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담당자 메일로 서류제출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지수 매니저	02-2220-4071	rha234@hyuholdings.com
이한수 매니저	02-2220-4075	kwoanl@hyuholdings.com

□ **제출서류** : (◎ :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창업 7년 이내 기업	예비창업자	비고
참가신청서	◎	◎	[01]양식 사용
사업계획서	◎	◎	[02]양식 사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약서 / 창업 및 유지 동의 등	◎	◎	[01]양식 사용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X	[03]양식 내 첨부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X	[03]양식 내 첨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타 매출증빙	◎	X	[03]양식 내 첨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조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65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를 기준으로 함